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 다만,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출자 또는 채무보증을 하지 않고, 동 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채무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8 제3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10 제4항 제2호 중 “주식이전”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30일 이내”를 “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단,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4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 제1항 중 “5이내”를 “5개 이내”로 한다.

제53조의 4제1항 제1호 중 “성명과 주소를”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제53조의 4제6항 중 “분쟁조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분쟁조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제53조의4 제7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 제4항 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5 제1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로 한다.

제53조의9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를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64조의6 제1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 중 별표 1에 규정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8.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별표 1에 규정된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9. 법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

별표 2 2. 라. (1) 중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를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2. 라. (2) 중 “부채가”를 “채무상태가”로 하고,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제1항 관련]

1.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금액 기준

가. 주식취득·영업양수·합병·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 1000억 원 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 x 2/10,000
• 1,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15,000	20백만 원 + 1000억 원 초과분 x 2/15,000
• 1조 원 초과	2/20,000	140백만 원 + 1조 원 초과분 x 2/20,000

나. 임원점입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피점입회사의 자산총액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 1000억 원 이하	100만 원
• 1,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120만 원
• 1조 원 초과	140만 원

2. 가중 및 감면사유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 1)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 여러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경우
- 3) 다른 시정조치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시정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 4) 불이행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의 해산·청산·회사정리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 고〉

1. 위 제1호 가목에서의 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 제1호 나목에서의 자산총액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생략)</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③·④ (생략)</p> <p>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② (생략)</p> <p>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p> <p>1. 2. (생략)</p> <p>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p>	<p>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 다만,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출자 또는 채무보증을 하지 않고, 동 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채무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③ (생략)</p> <p>④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생략)</p> <p>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u>주식이전에</u>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p> <p>3. ~ 7. (생략)</p> <p>⑤·⑥ (생략)</p> <p>제2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p> <p>①·② (생략)</p> <p>③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30일 이내</u>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p> <p>〈신설〉</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p>	<p>〈삭제〉</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p> <p>----- <u>주식의 포괄적 이전</u></p> <p>3. ~ 7.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 <u>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단,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로 한다)부터 30일 이내</u>-----.</p> <p>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p> <p>①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 ⑨ (생략)</p> <p>제49조(소회의의 구성) ①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5이내의 소회의를 둔다.</p> <p>②·③ (생략)</p> <p>제53조의4(조정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u>성명과 주소</u>를 말한다)</p> <p>2. (생략)</p> <p>3. 신청의 이유</p> <p>② ~ ⑤ (생략)</p> <p>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u>분쟁조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u></p> <p>⑦ 협의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u>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u> 나. <u>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요구서(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u></p> <p>2.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u>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u> 나. <u>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u></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49조(소회의의 구성) ①----- ----- 5개 이내-----.</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3조의4(조정 신청 등)①----- ----- ----- ----- 1.----- ----- <u>성명</u> <u>을</u>-----</p> <p>2. (현행과 같음)</p> <p>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분쟁조정신청서</u> ----- -----.</p> <p>⑦ 협의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u>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u>, 피신청인에게는 <u>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u></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인을 포함한다)의 주소와 성명 등 일반현황</u> <u>다.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u> <u><신 설></u></p> <p>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p> <p>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⑦ (생략)</p>	<p>⑧ <u>협회의 위원장은 법제4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 제4항 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① -----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p> <p><u>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회의 위원장이 -----.</u></p> <p>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①-----</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 중 별표 1에 규정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u></p> <p>7. <u>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u></p> <p>8. <u>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별표 1에 규정된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u></p> <p>9. <u>법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u></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독점규제 및 공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
경안입법예고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6조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관련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2.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행위	가.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등 위반행위	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 제17조 제4항	법 제1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1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나. 상호출자행위	법 제9조, 제17조 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7조 제2항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라. 의결권행사 금지명령 위반행위	법 제17조의2 제1항·제5항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가.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19조, 제22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5억 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28조 제2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4.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24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29조, 제31조의2	
	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법 제32조 제1항, 제3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 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5.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안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비 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